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RCMS 사용자 매뉴얼

2021. 9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사업수행 매뉴얼

- RCMS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공장사업 안내 -

1 사업 개요

□ 스마트공장 사업 개요

- (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규모) 3,300개* 내외(붙임 3. 참고)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기관별 과제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희망기업

지원유형	신청자격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업규모	지원조건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기초 수준 이상,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또는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이 해당	0.7억원	6개월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등이 해당	2억원	9개월
고도화2*		중간2 수준 이상,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등이 해당	4억원	12개월

* 고도화1·2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사항

- (사업비분담)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정부보조금 지원하며, 나머지는 도입기업 부담
- (사업연장) 사업기간은 연장신청 및 승인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함
- (환수가능여부) 구축완료 후 최종점검 시 평가위원 판단하여 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스마트공장 사업비환수통장으로 환수)

□ 스마트공장 사업추진 체계

○ 조직체계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관리, 총 사업예산 통제 및 감독
 -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추진계획, 매뉴얼 등 실질 제반업무 수행
 - (제조혁신센터) 전국 총 19개소* 있으며 스마트공장 도입희망 기업을 발굴하여 구축 전·후 등 자금집행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 지원
- * 지역TP: 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포항,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컨소시엄)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의미함



○ 사업비흐름

- (정부지원금) 중기부로에서 교부받은 사업비를 추진단이 지역TP에 접수된 신규 과제 건수에 맞추어 사업비 배정*

* ('21년 1차 기초, 고도화1 신청기준) 총 과제 수 2,313개, 사업비 262,920백만원이며 추후 2차 신청·접수 예정이므로 과제 수 및 사업비 증가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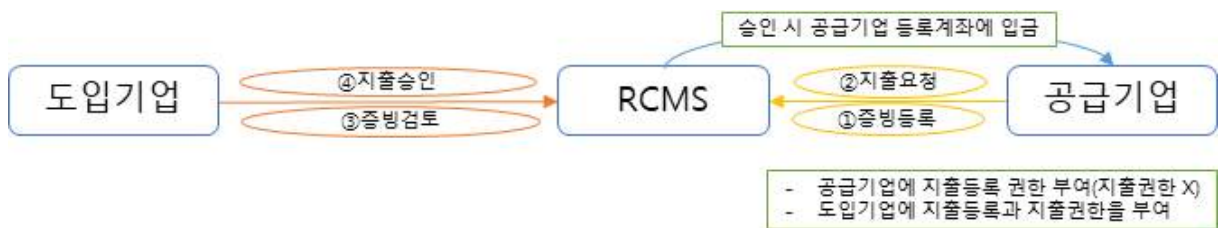


- (민간부담금) 협약체결* 후 도입기업이 자부담금을 RCMS 가상계좌로 입금 완료시 사업비 지출 가능함

※ 정부보조금(국비)입금은 도입기업이 착수계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역TP에 확인 후 RCMS 가상계좌로 지급

* 착수계 제출 시 도입기업은 자부담금 전액 또는 최소 50%이상을 가상계좌에 납부** (현물부담금 제외) 지역TP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가상계좌에 입금처리

** 착수계 제출 시점에 도입기업이 자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여 제출가능



- (사업비처리) 사업종료까지 총 사업비의 90% 건별 처리*, 사업완료 후 6개월(집중A/S기간) 후 문제없을 시 도입기업 승인 하 잔금 10% 지급

* 세목별(S/W개발비, H/W구입비, S/W구입비, N/W구축비, 집중AS비용, 인건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건별처리가 원칙이나 도입기업과의 합의 하에 고가의 장비 구매 등은 분할 납부(예: 선금, 중도금, 잔금) 가능하며 반드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행약정서 등) 필수 제출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고도화1) 참여기업 사업비 흐름

신청			협약		착수		중간점검		구축완료		성공판정		협약종료	
구분	평가	승인	시스템(H/W, S/W) 구축 및 테스트 완료				최종감리, 완료점검	6개월 집중 AS기간 (기능, 활용문제 해결)						
사업비 조성	정부지원금(50%)	200백만원	RCMS 사업비 (360백만원)											
	기업부담금(50%)	200백만원(현금 160백만원, 현물 40백만원)												
사업비 지급	RCMS 계좌	324백만원(건별지급 90%)				36백만원(잔금지급 10%) →								

※ 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

2 사업 수행

□ 스마트공장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도입

- (배경) 스마트공장사업의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검증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목적) RCMS*를 도입하여 사업비 사용정보(자금 흐름, 출처 등)에 대한 관리, 검증, 증빙보관 등을 통해 사업비집행 관리·감독 강화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전자금융IT기술을 국가 R&D자금 관리에 접목한 온라인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스마트공장 사업비관리 수행기관용 RCMS 간편 절차

- (수행절차) 사업비 지출 정산이 총 4단계(회원가입 - 환경설정 - 사업비사용 - 정산준비) 순으로 처리되며 사업비관리를 체계적이고 손쉽게 전산처리 가능
- (기대효과) 사업비관리를 RCMS로 일원화하여 지역TP(전담기관), 도입 기업(수행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빠르고 정확한 지출처리 효과예상

순번	단계	내 용
1	회원가입	도입기업 사업담당자는 해당 링크로 www.rcms.go.kr [수행기관 로그인] - [회원가입] 필수 ※ 이미 가입하였다면 회원가입 불요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보제공 사이트 내 <input type="checkbox"/> RCMS 항목 체크
3		[직장] - [사업체검색] - [사업체명] 조회 - [적용] 클릭하여 등록완료 ※ 사업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ITECH+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www.itechkeitre.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사업체정보 등록 필요
4	환경설정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RCMS 펌뱅킹 서비스 이용 동의서]의 [동의]가 필요 ☞ 접속경로 : 환경설정 ▶ 과제설정 ▶ 펌뱅킹 이용 동의 [연구비계좌] 조회 - 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예금주 조회] 클릭 - 예금주명 정상이면 확인 후 [동의] 클릭 - 인증성 팝업에서 법인공인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 입력하면 서비스 동의 완료 ※ 과제책임자만 등록가능하며 반드시 도입기업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계좌와 법인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함
5		민간부담금의 발생이자를 도입기업(수행기관)에 지급하기 위한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접속경로 : 환경설정 ▶ 기관설정 ▶ 세무(이자지급)정보 [수행기관 정보] 확인 - [동의하러가기] 클릭 - 예비계좌 정보 등록 ※ 과제책임자만 해당 기능 이용가능
6		[과제목록] - [조회] - [과제번호] 클릭 - 사업비구성, 수행기관, 참여연구원, 과제조회권한자 확인

순번	단계	내 용
		<p>협약정보가 상이한 경우 지역TP에 연락하여 수기과제정보 수정 후 재업로드 필요</p> <p>☞ 접속경로 : 환경설정 ▶ 과제설정 ▶ 협약정보 확인</p> <p>※ 과제책임자 및 전담기관총괄담당자만 해당 기능 이용가능</p>
7		<p>협약정보 확인 후 [사업비사용시작] 클릭해야 사업비 사용 가능</p> <p>☞ 접속경로 : 환경설정 ▶ 과제설정 ▶ 협약정보 확인</p> <p>※ 협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사용가능하며, 사업비 사용시작은 과제책임자만 처리할 수 있음</p>
8		<p>RCMS 사용자별 권한 관리는 대상과제 선택 후 [조회] - [등록] - 사용자 [검색] - 대상자 [조회] 및 [등록] 클릭 - [확인] 클릭 시 권한 등록 완료</p> <p>☞ 접속경로 : 환경설정 ▶ 과제설정 ▶ 사용권한</p> <p>※ 과제책임자는 조회, 등록, 이체 모두 가능하며 참여연구원은 과제책임자의 설정에 따라 권한 자동화</p>
9		<p>과제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만 사업비 사용이 가능함</p> <p>☞ 접속경로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비목우선등록</p>
10		<p>사업비 사용을 위해 비목(세목/세세목) 및 증빙정보 등록 필수</p> <p>비목별 사용내역 확인 - 비목선택 - [증빙파일등록] 클릭 - [파일선택] 후 [저장] - 증빙구분(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선택 - [다음단계]</p> <p>☞ 접속경로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비목우선등록</p>
11	사업비 사용	<p>도입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여 사업비 사용 등록가능</p> <p>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 홈택스에 등록된 법인공인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확인] - <input type="checkbox"/>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등록합니다 항목 체크 - 조회 내역 중 등록 대상 선택 후 [저장] 클릭</p> <p>☞ 접속경로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증빙 우선 등록 ▶ 증빙구분(전자세금계산서)</p>
12		<p>현물등록은 계획된 비목 및 금액에 맞추어 사용내역을 등록</p> <p>현물 대상 과제 선택 - 현물 사용등록 - [현물계획] 현물로 계획된 금액, [현물사용]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 [현물잔액] 나머지 미지급한 잔금 - [등록하기] 클릭 후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p> <p>☞ 접속경로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 ▶ 현물 사용등록</p>
13		<p>연구비 이체 실행은 이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과제책임자 및 전담기관총괄담당자)만 가능하며 이체비밀번호를 설정해야함(권한설정메뉴 - 환경설정 - 과제설정 - 사용권한)</p> <p>☞ 접속경로 :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 실행</p> <p>※ 연구비 이체 등 권한 설정은 권한설정 메뉴 내 환경설정 ▶ 과제설정 ▶ 사용권한 변경가능</p>
14	정산준비	<p>과제 목록 내 정산 대상 과제 선택 - 정산 전 준비사항 숙지사항 확인</p> <p>☞ 접속경로 : 연구비 정산 ▶ 정산 준비</p> <p>※ 정산준비를 통해 집행마감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p>
15		<p>전자문서 형태에 맞춰 등록 정산서류등록</p> <p>[정산서류등록] 탭 클릭 - 등록 클릭 후 정산서류 파일업로드(수정/삭제 가능) - 업로드 확인여부는 [문서등록여부] 내 문서모양 아이콘 클릭</p>
16		<p>모든 정산서류등록 완료 및 검토완료 후 집행마감 클릭</p> <p>[집행마감] 탭 클릭 - 세목별 사용내역 조회 및 재확인 - [집행마감] 클릭</p> <p>※ 집행마감 후 사업비 사용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전에 이체를 완료해야함</p>
17		<p>정산완료의 마지막 단계로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함</p> <p>과제 목록 내 대상 과제 선택 - [세목]별 클릭하여 사용내역 조회 - [사용실적보고서 조회] 클릭하여 정산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재확인 - <input type="checkbox"/> 확인여부 체크 - [보고서제출] 클릭</p> <p>☞ 접속경로 : 연구비 정산 ▶ 정산 준비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p> <p>※ 보고서 제출 후에는 사업비 사용 내역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 및 제출해야함</p>

□ 전담기관 수기과제관리·등록(전담기관 사업담당자만 해당)

- 협약 완료된 신규과제가 RCMS에 등록 완료되면 전담기관(지역TP 등)은 사업관련 세부정보를 입력*

* 총 4개 서식(협약, 협약기관, 세목별한도, 참여연구원)이며 RCMS에서 엑셀 서식파일받기 가능



- 수기과제 서식 입력 시 참고사항

- (공통사항) 모든 서식 내 과제단계코드 0, 연차 1으로 입력
- (유의사항) RCMS에 등록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만 수기과제 서식 입력가능

구분	코드명	키 값
협약 서식	PMSID	G27
	PMS과제ID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RCMS제출자료 내 확인가능
	협약상태구분코드	08
	지자체부담현금금액	0
	지자체부담현물금액	0
	사업비정산조직 사업자등록번호	공란
	정산형태코드	1
	바우처대상여부	N
	국가연구개발사업여부	N
	수행기간구분코드	CA5030
	비목구성기준구분코드	CA8051

협약 기관 서식	협약기관법인등록번호	협약기관이 법인인 경우 필수 입력																		
	정부출연금지급예정일자	공란																		
	정부출연금가상계좌발급요청여부	공란																		
	지자체부담현금금액	0																		
	지자체부담현물금액	0																		
	민간부담금입금예정일자	공란																		
	집행제한금액	0																		
	사업비지급구분	M01001																		
세목별 한도 서식	비목코드	<p>엑셀파일 하단 비목코드 참고하여 작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목코드</th> <th>세목명</th> </tr> </thead> <tbody> <tr> <td>B0241</td> <td>S/W개발비</td> </tr> <tr> <td>B0242</td> <td>H/W구입비</td> </tr> <tr> <td>B0243</td> <td>S/W구입비</td> </tr> <tr> <td>B0244</td> <td>N/W구축비</td> </tr> <tr> <td>B0245</td> <td>집중AS비용(10%)</td> </tr> <tr> <td>B0246</td> <td>도입기업 인력 인건비</td> </tr> <tr> <td>B0247</td> <td>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td> </tr> <tr> <td>B0249</td> <td>기타비용</td> </tr> </tbody> </table>	세목코드	세목명	B0241	S/W개발비	B0242	H/W구입비	B0243	S/W구입비	B0244	N/W구축비	B0245	집중AS비용(10%)	B0246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B0247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B0249	기타비용
세목코드	세목명																			
B0241	S/W개발비																			
B0242	H/W구입비																			
B0243	S/W구입비																			
B0244	N/W구축비																			
B0245	집중AS비용(10%)																			
B0246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B0247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B0249	기타비용																			
참여 연구원 서식	협약ID	공란																		
	협약기관사업자등록번호	도입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인력역할구분코드	<p>반드시 과제책임자 1명, 전담기관과제 담당자 1명 입력해야함 ※ 전담기관과제담당자는 RCMS 이용권한부여 받은 자임</p> <table border="1"> <thead> <tr> <th>코드</th> <th>코드명</th> </tr> </thead> <tbody> <tr> <td>02</td> <td>과제책임자(도입기업PM)</td> </tr> <tr> <td>04</td> <td>참여연구원(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직원)</td> </tr> <tr> <td>20</td> <td>전담기관과제담당자</td> </tr> </tbody> </table>	코드	코드명	02	과제책임자(도입기업PM)	04	참여연구원(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직원)	20	전담기관과제담당자										
	코드	코드명																		
	02	과제책임자(도입기업PM)																		
	04	참여연구원(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직원)																		
	20	전담기관과제담당자																		
	주민등록번호	공란																		
	과제참여율	100																		
	산출근거연봉금액	공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공란																			
실명인증CI값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시 문자인증 1회로 자동생성완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요청하여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성별구분코드	남자 A6300M / 여자 A6300F																			

□ 용어의 정의(붙임 2. 참고)

- RCMS는 R&D사업에 특화된 연구비관리시스템이므로 스마트공장사업과 용어가 다를 수 있으나 연구비는 사업비로 이해하는 등 배포된 매뉴얼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

* 매뉴얼은 RCMS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사업비 관리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스마트공장 사업비는 정부지원금(50%), 민간부담금(50%)로 구성되며 RCMS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지출처리
- (세목구성) 스마트공장 사업비는 총 8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1년부터 집중AS비용(10%)이 추가되어 RCMS 등록 시 주의 필요
- (세목상세) S/W 개발비, H/W 구입비, S/W 구입비, N/W 구축비, 집중AS비용,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기타비용

비목명	비목 코드	구분 항목	세목명	세목 코드	내용	사업기간 내 지급금액	집중AS기간이후 지급금액
직접비	B0200	1	S/W 개발비	B0241	스마트솔루션 프로그램 개발비	90%	10%
		2	H/W 구입비	B0242	스마트솔루션 장비비(부품)	90%	10%
		3	S/W 구입비	B0243	스마트솔루션 장비비(S/W)	90%	10%
		4	N/W 구축비	B0244	스마트솔루션 네트워크 구축(용역)	90%	10%
		5	기타(할인)비용	B0249	기타비용	90%	10%
		6	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	B0245	스마트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비	-	100%*
		7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B0246	참여인력 인건비(현물)	100%	-
		8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B0247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현물)	100%	-

* 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는 총사업비의 10%로 정하며, 구분 항목별 비율은 수정 가능(도입기업 인력 인건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제외)

□ RCMS 사업비 집행순서

순번	내용
1	도입(공급)기업 이체정보 등록 및 증빙자료 시스템 업로드
2	도입기업 과제책임자 및 지역TP 사업총괄담당자 집행 검토·승인
3	RCMS 계좌에서 도입기업 사업비계좌 경유하여 거래처(공급기업) 계좌로 실시간 이체
4	거래처(공급기업)로 지출완료 처리

○ 사업비 집행 등록

- (비목우선등록) 스마트공장 사업은 비목별로 건별 지급 처리되므로 사업비(연구비) 사용 등록 시 비목별 등록 필수
- (증빙정보등록) 증빙구분을 선택*(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등) 및 해당 파일을 등록해야 사용등록완료 및 지급처리가능

*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된 내역만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도입기업의 공인인증서 필수

※ 관련 증빙서류 서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내 “21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매뉴얼” 참고바람(붙임 4. 참고)

세목	증빙서류
S/W 개발비	세금계산서 (도입·공급기업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가능)
H/W 구입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검수 확인서(추진매뉴얼 양식 활용)
S/W 구입비	
N/W 구축비	
기타(할인)비용	
집중AS기간 이후 지급비	세금계산서

○ 과제수정(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변동)

- (입금 미완료) 지역TP에서 수기등록서식(엑셀파일) 수정 후 RCMS에 재업로드 하면 과제 변경완료

- (입금 완료) 환수가 필요한 경우 과제번호(예: SF21120011, SF로 시작하는 숫자 8자리) 및 환수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연구비혁신팀으로 공문발송 후 정정가능

○ 사업비 입금 및 정산준비

- (사업착수)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RCMS 가상계좌에 납부 및 관련 서류*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해야함

* 착수계, 현물출자 활약서,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기타 전담·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등

※ RCMS 신규과제등록을 매주 1회 실시하므로 시스템 등록지연으로 14일 이내 입금할 수 없는 경우, 지역TP와 상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 사업관련 제재 또는 불이익 없음

- (정산시점) 협약종료시점 기준 “집중AS기간”(사업종료 6개월 간) 이후 잔금인 총 사업비의 10%는 도입기업이 문제없다고 판단 하에 지급완료

※ (예시) 협약서 내 협약종료일 : 6월 30일 → 잔금(10%) 정산가능일 : 12월 29일~

- (정산방법)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위해 도입기업은 중간 완료보고서*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도 첨부 필수)

* 중간점검반 및 감리기관은 점검·감리 수행 시 사업비 사용실적을 필히 확인하고 그 결과도 해당 보고서(완료보고서) 내 포함해야함

- (정산종료) 정산서류등록 탭을 클릭하여 정산서류 파일* 업로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여 집행마감

* (제출서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운영현황보고서,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개선조치 확인서, 하자보증보험증권, 개발(단계별)산출물 목록 등

※ RCMS에서 사업비 “집행마감”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집중AS기간 종료 후(잔존 사업비 지급완료) 처리할 것

도입기업(수행기관) FAQ

Q1. 도입기업(수행기관)이 RCMS 사용등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1. ① 지급처리를 위해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명의로 통장으로 기존 사용하던 것을 등록하여도 됩니다. ② 도입기업 사업 참여자는 CI값 생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③ 참여연구원 등록을 위해 도입기업 사업관리자(과제책임자) 한 분은 꼭 RCMS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④ 그리고 지역TP에서 요청한 사업비보정내역(집중AS비용, 기타할인비용 등)을 제출해야 과제등록 준비가 완료됩니다.
Q2. RCMS에 참여인력 등록을 위해서는 실명인증 CI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암호화된 CI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시 문자인증을 통해 CI값이 자동으로 생성·부여됩니다. 만약에 시스템오류로 미생성된 경우 회원현황 - 개인인증 - 휴대폰 인증받기를 통해 CI값 생성이 가능합니다. 생성완료되면 TP가 해당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Q3. 협약체결 하였고 과제등록이 완료되었는데 [협약정보확인상태]가 "미확인" 상태입니다. 왜 "미확인" 상태인가요?
A3. 수행기관(도입기업)에서 "사업비사용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나타는 것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확인" 상태로 바뀝니다.
Q4. 세부관리기준을 보면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RCMS에 과제가 등록되어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간 내 입금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4. 시스템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지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TP와 상의하여 과제등록 완료 일자 및 기업부담금 입금 기한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Q5. 가상계좌생성은 어떻게 하며 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지역TP에서 수기과제등록 완료하면 민간부담금 가상계좌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연구비관련계좌 조회를 통해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6. 부가세는 RCMS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급-도입기업 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별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Q7. 참여연구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7. 도입기업(수행기관) 과제책임자가 과제 선택하여 "사용권한 등록/수정" 탭에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참여연구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RCMS 초보자용 입문 매뉴얼(페이지 25~27)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Q8. 정부지원금 입금은 언제 되나요?
A8. 정부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입금, 착수계 제출확인 완료 후 2주 내 RCMS 가상계좌(정부지원금 계좌)로 입금예정입니다.

지역TP(전담기관) FAQ

Q1. 집중AS기간에 대한 지급금액 10%는 어떻게 계산하고 수기과제등록 엑셀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A1. [세목별한도 서식] 내 세부비목코드에 맞는 코드(집중AS비용(10%) 코드명: B0245)설정하고 사업비의 10%로 산출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제목 "21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Q2. 가상계좌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2. 수기과제관리에서 과제 하나 선택 후 정부출연금입금 "정부출연금입금 가상계좌 발급/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Q3. 민간부담금 분할납부 가상계좌는 어떻게 생성하나요?
A3. [연구비 관련 계좌] 화면에서 과제를 조회 및 선택하여 "가상계좌 관리" 클릭 → 가상계좌 분할 정보 내 "추가" 클릭 → 분할금액, 입금시작/종료일자 입력 후 저장 → 분할 납부를 위한 계좌가 재정의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의 "스마트공장 RCMS 가상계좌 관련 안내" 붙임파일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내의 글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사업과 일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아래 용어정리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공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여 매뉴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기존 용어	스마트공장 사업 이해 용어
연구비	사업비
연구비에치	사업비에치
수행기관	도입(공급)기업
전문기관	지역TP 및 추진단
연구비사용 증빙관리	사업비사용 증빙관리
연구비사용	사업비사용
수행기관 연구비계좌	도입기업 사업비계좌
연구비 사용/취소	사업비 사용/취소
연구비 정산	사업비 정산
연구활동비	사업비
연구비카드	사업비카드
참여연구원	도입(공급)기업 사업참여자
연구비 상시점검	사업비 상시점검

※ RCMS 초보자용 입문 매뉴얼 기준 작성함

붙임3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별 현황

구분	지원유형		목표수	내용	정부지원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일반	기초	2,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50%, 최대 0.7억원
		고도화1	800		50%, 최대 2억원
		고도화2	30		50%, 최대 4억원
	업종별특화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일반 사업과 동일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개별) 일반사업과 동일 (공동) 3년간 최대 64억원
	일반형 디지털클러스터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일반사업과 동일
	K-스마트등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3년간 최대 12억원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고도화1) 50%, 최대 2억 (고도화2) 50%, 최대 4억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현황 진단 및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 	(기초) 50%, 최대 0.7억 (고도화1) 50%, 최대 2억

※ 스마트공장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집행하는 과제 수는 계획대비 증가할 수 있음

붙임4

증빙서류 관련 서식(예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착수계					
도입기업명			공급기업명		
과제번호			코디네이터명		
협약기간	(총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일	(구축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일	(집중AS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일		
중간보고서 제출	기술설계 완료시점(20 년 월 일)으로부터 2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구축 완료일(20 년 월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운영현황보고서 제출	집중AS 기간 완료시점(20 년 월 일)으로부터 2주 이내				
협약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정부지원금	도입기업 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도입기업 사업관리 인건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소계	
부담금 납부계획 (현금)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납부시기	납부금액	비율	비고
	1차	착수계 제출전까지			납부완료
	2차	중간보고전까지			
	합계			100%	

[붙임 1]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붙임 2] 현물출자확약서 1부

[별첨] 사업계획서(최종승인된 제출본으로 같음) 1부

착수계 제출일자 : 202 . . .

도입기업명	대표	(인)
대표 공급기업명 (권소시업 대표기업)	대표	(인)
참여 공급기업명	대표	(인)
참여 공급기업명	대표	(인)

[붙임 2] 현물출자확약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현물출자 확약서			
도입기업명		공급기업명	
과제번호		코디네이터명	

	현물출자 금액				
도입기업 인건비	성 명	월급여	기간(월)	투입률(%)	소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첨부 1]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기업부담금 현물을 위와 같이 출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추후 현물 미출자 또는 허위제출의 경우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관리 지침·세부관리지침, 국가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제제부가금 부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자 : 202 . . .

도입기업명

대표

(인)

기업부담금 지급확약서

과 제 번 호				
기 업 명				
사 업 기 간	2xxx 년 월 일 ~ 2xxx 년 월 일			
총 사 업 비	일금 원 (₩)			
기업 미지급 (잔금)	금액	원	납부 예정일*	

* 납부유예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 설정. 단, 중간보고서 제출일이 유예기간 내에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납부일 설정

본인은 상기와 같이 협약내용에 의거 도입기업 미지급 금액을
2xxx년 월 일 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xxx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귀하

납품 검수 확인서

도입기업명	
공급기업명	
과제번호	

번호	구분	장비명	모델명	상세사양	단가(원)	수량	금액(원)	설치 위치	비고
1	H/W 구입비	Server Monitor	000-000-000	업체명 : 화면크기 :	500,000	2	1,000,000	공장동	
2	H/W 구입비	패널 PC	000-000-00		500,000	2	1,000,000	사무실	
3	H/W 구입비	무선 공유기	000-000-000		100,000	5	500,000	공장동	
4									
5									
..									
..									
..									
..									
합계금액 (VAT 별도)							000,000,000		
<p>상기와 같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p> <p>2021. 00. 00.</p>									
작성자(공급기업)				(인)	승인자(도입기업)				(인)

붙임. 장비사진 등

[붙임] 장비 사진 등

장비명	설치사진	S/N(사진)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도입기업명		공급기업명	
과제번호		집중AS 기간	202 년 월 일~ 202 년 월 일

당사 ((주)○○○)는 공급기업((주)○○○○, (주)○○○○, (주)○○)이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따라 본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집중AS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급기업이 작성한 운영현황 보고서가 실제 현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붙임. 결과물 인수인계서

[붙임] 결과물 인수인계서

결과물 인수인계서

공급기업((주)○○○○, (주)○○○○, (주)○○)은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솔루션 소스코드 포함) 일체를 협약서, 사업완료보고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 ((주)○○○)에게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도입기업명	대표	(인)
공급기업명	대표	(인)

202 년 월 일

도입기업명	대표	(인)
-------	----	-----

집중AS기간 개선조치 확인서

도입기업명		공급기업명	
과제번호		보완 통보일	
		개선조치 확인일	

보완요청 사항	개선조치 결과

※ 공급기업명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과제 집중AS 보완요청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본 개선조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공급기업명
대표
(인)

도입기업명
대표
(인)

